

WTO 가입 앞두고 경제질서 정비 가속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각종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탈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출현하는 가짜상품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피 조사기업 중 34.8%가 가짜상품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 60개 도시의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가짜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개인기업(個體戶)의 44.5%와 일부 중소기업이 가짜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재정부가 행한 기업 재무상황의 조사에서 조사대상 157개 기업 가운데 155개 기업이 순이익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소비자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허위광고, 가짜상품, 수량 부족, 사기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고발 건수는 12.5만 건에 달했다.

게릴라식 영업으로 단속 어려워

가짜가 가장 난무하는 상품 중의 하나는 담배이다. 담배 산지로 유명한 윈난(雲南)省의 담배 제조회사들은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짜 상표 담배를 뿌리뽑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고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관리들은 적발된 가짜상표 담배를 소각하면서 수량을 속이거나, 심지어는 단속기관들이 가짜담배를 생산하고 이를 마치 적발한 것처럼 속여 상당액의 현상금을 수령해 가는 사례가 있어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하였다. 가짜상품 단속이 오히려 가짜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가짜상품 유통이 심한 지역이나 밀수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단속기관의 관리들은 범법자들과 연계되어 뇌물을 받고 감독이나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베이징(北京)市에는 2,300여 개의 실내장식 가게와 기업이 있다. 그 중에서 1,400여 개는 영업허가서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무등록

업소는 고정 사업장 없이 게릴라식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영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소들도 무등록 업소와 마찬가지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은 비용이 수반되는 애프터 서비스를 회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길어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게릴라식 영업 활동에는 비단 이들 소규모 상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일부 대기업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둥성과 저장성이 가짜상품 진원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짜상품의 제조·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광둥성(廣東省)과 저장성(浙江省)이 꼽히고 있다. 광둥성 동부는 담배를, 서부는 농산품을, 그리고 저장성은 상표를 중심으로 가짜상품 제조활동이 성행하고 있다.

가짜상품 제조에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법인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신발·모자·일반기계를 중심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이들은 원자재 구매·운송·보관·판매를 분업화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특히 최근에 이러한 기업형 가짜상품 제조활동이 점차 그룹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개인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가공이 가능한 식품·일상 소비제품·농산품을 중심으로 소량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신용의식 결여와 느슨한 처벌 등이 가짜상품 부추겨

이와 같이 가짜상품이 난무하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 주체인 기업들의 신용의식 결여이다. 자가 브랜드나 기술이 없어도 상표를 붙이면 돈을 벌 수 있으며, 신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가짜상품을 만들게 하는 주된 유인이다. 또한 신용을 지키는 데 대한 격려와 혜택이 없으며, 신용을 무시하는 경우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제재가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가짜상품 제조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신용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경제 관련 계약의 50%가 사기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현찰판매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불법·위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가짜상품의 생산·판매로 입건된 범법자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4%에 불과하며, 벌금도 위법 관련 금액의 4.8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년에 세관법(海關法)이 수정

되기 전에는 5만 위안(6,000 달러)까지의 밀수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했으며, 밀수 관련 도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밀수 사실이 설사 발각된다 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기존의 어선 등을 이용하여 다시 밀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셋째, 제도적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상의 규범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설사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판이 단지 판결에 그침으로써 법 집행이 느슨하고 처벌도 그 형평성을 잃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 성향이다. 밀수나 가짜상품이 난무하는 지역의 일부 지방관리들은 이를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궤변에 입각하여 단속보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술·자동차 부품·의약품 등 가짜상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은 기대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단속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짜상품이 창궐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관리들의 논리는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고, 당해 지방 산업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용사회 확립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명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한 신용사회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중국에서는 은행의 신용에 대한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없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은행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해 4월 예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6월 상하이(上海)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신용사회 확립을 위한 노력의 첫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많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 그 이유는 첫째, 여전히 제도적인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점 금지법'과 같은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률·법규의 규정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허술하다는 점이다. 즉, 원칙만 명시하거나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지나치게 많고, 형량이나 처벌의 신축성이 과도하며, 자유 재량권이 커서 법률의 효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실제 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로, 일부 법률이나 법규에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 말에 '시장경제 질서의 정돈과 규범에 관한 결정'(關於整頓和規範市場經濟秩序的決定)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공안부는 금년 6월부터 1년 동안 ① 가짜상품과 해적판 등이 창궐하는 상품·업종·지역의 지적재산권 침해, ② 위조 어음·지폐 제조 등 금융관련 위법, ③ 탈세 및 서류위조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조세관련 범죄, ④ 계약 사기, 건설관련 입찰 부조리, ⑤ 밀수, 자본도피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金 周 永】